

의안번호	2214817
의 퇴 인	이헌승의원
회 답 일	2025.12.8.
추계번호	25D6619
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위탁병원의 감면진료 대상 연령을 하향(75세→60세)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3억 2,500만원, 2031년 3억 7,6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17억 4,900만원(연평균 3억 5,0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감면대상 연령 하향 (안 제17조제6항)	325	337	349	362	376	1,749	350

주: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제17조(진료)	보상금을 지급받는 선순위유족으로서 위탁병원 진료비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현행 “75세 이상”에서 “60세 이상”으로 하향 조정함(제6항)	재량규정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제17조제6항(위탁병원 감면대상 확대)	○	—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유가족의 위탁병원 감면진료 대상 연령을 확대하는 경우, 진료비 지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
[표 2]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감면을 현황

감면대상	보훈병원	위탁병원
독립유공자	전액지원	전액지원(비급여는 MRI, 초음파, 건위소화제만 해당)
독립유공자 유가족	60%	60%(보상금을 받는 75세 이상 선순위유족 1명 한정)

자료: 국가보훈부

- 본 추계에서 위탁병원 감면진료 대상 연령 확대의 추가재정소요 산출 시, 신규인원, 수진횟수, 감면진료비 단가는 다음의 변수를 적용하여 추정함
 - 신규인원: 보상금을 받는 60세 이상 75세 미만 독립유공자의 선순위유족 인원(2024년 기준 57세 이상 72세 미만)에 연평균증감을 적용
 - 수진횟수: 최근 5년 위탁병원 평균 수진횟수 적용
 - 감면단가: 감면진료비 단가(2024년 기준)에 최근 5년 연평균증가를 적용
- 개정안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, 본 추계에서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위탁병원 감면진료 대상 연령 하향(75세→60세, 안 제17조제6항)

□ 위탁병원 감면진료 대상 연령의 하향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감면진료의 대상으로 추가되는 인원에 감면진료비 단가와 수진횟수를 각각 곱하여 추계함

□ 2026년 기준 보상금을 받는 60세 이상 75세 미만의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예상 인원(1,326명)에 연평균 증감율(-0.09%)을 적용하여, 추계기간 동안 위탁병원 감면진료의 신규 대상인원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음

[표 3] 위탁병원 감면진료 신규 인원: 2024~2031년 (단위: 명)

구분	2024	2027	2028	2029	2030	2031
신규인원(누적) (57~71세)	1,326	1,325	1,324	1,322	1,321	1,320

주 1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위탁병원 감면진료 신규인원만 표시한 것임
 2. 2026년 인원은 2024년 현재 57세 이상 72세 미만의 인원(1,326명)과 동일하다고 가정함
 자료: 국가보훈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

□ 2024년 결산기준 위탁병원 감면진료비 단가 25,202원에 연평균 증가율(3.8%)¹⁾을 적용하여, 추계기간 동안 감면진료비 단가를 추정하면 다음과 같음

[표 4] 위탁병원 감면진료비 단가: 2024~2031년 (단위: 원)

구분	2024	2027	2028	2029	2030	2031
감면진료비 단가	25,202	28,186	29,257	30,369	31,523	32,721

자료: 국가보훈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

□ 추계결과, 개정안에 따라 위탁병원 감면진료의 대상 연령을 하향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17억 4,900만원으로 추계됨

1) 위탁병원 감면진료비 단가: 2020~2024년

	2020	2021	2022	2023	2024	연평균 증가율
감면진료비 단가	21,721	20,261	24,360	22,756	25,202	3.8%

[표 5] 위탁병원 감면진료 대상 연령 하향의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구분	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
위탁 병원	감면진료 신규인원(a, 명)	1,325	1,324	1,322	1,321	1,320	—
	수진횟수(b, 회) ²⁾	8.7	8.7	8.7	8.7	8.7	—
	감면진료 단가(c, 원)	28,186	29,257	30,369	31,523	32,721	—
	추가재정소요 (d=a×b×c, 백만원)	325	337	349	362	376	1,749

주: 수진횟수는 위탁병원 감면진료 대상자의 연평균 수진횟수를 적용함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진료대상자 및 진료횟수가 과거 추이와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장삼열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삼열	02-6788-4831	jsy@na.go.kr

2) 위탁병원 수진횟수 현황: 2020~2024년

	2020	2021	2022	2023	2024	평균
수진횟수	10.1	8.4	8.3	8.7	8.0	8.7